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133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(5년)을 연장하여 마포농수산물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의2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3. 8. 24.~9. 13.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5) 제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원안의결(2023. 9. 21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2(존속기한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</p>	<p>제3조의2(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: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김종범 (☎ 3153-8584)